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07-제82호
----------	-----------

제출일자 2007. 11. 27.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개정이유

- 가.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적용시한 만료가 금년 말이므로 이에 따른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감면 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함
- 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6조의2)
-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을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 주택가액 3억원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으로 함
- 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9조의2)
- 감면에 관한 사항임에도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어 감면조례로 이관
 -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정함
- 다.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및 세율조정 (안 제14조의2)
- 감면기간 연장 : 2007.12.31 ⇒ 2009.12.31
 - 세율조정
 - 전방조정 자동차 : '08년 : 66%, '09년: 33% 경감
 - 기타 자동차 : '08년 : 33%, '09년 16% 경감
- 라. 관계법령의 명확화 및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7조, 제7조6호, 제7조7호,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 제16조, 제17조)
-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안 제7조6호)
 - 「과학관육성법」 ⇒ 「과학관육성법」 제6조(안 제7조7호)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9조

- ▶ 표 준 안 : 행정자치부 재정세제본부-2481(2007. 10. 4)
경상남도 세정과-10235(2007. 10. 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조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접수 없음

가) 예고기간 : 20일이상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공고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7조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제6호중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하며, 제7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판·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4조의2중 “2007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의2제1호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중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6조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4조의2 및 제14조의2제1호, 제14조의2제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경감한다.</p>	<p>제6조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p> <p>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p>	<p>○ '07.7.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p>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 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5. (생략)</p> <p>6.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p> <p>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각 호에서 정하는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p> <p>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p> <p>-----</p>	<p>○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p> <p>○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법」으로 법령 변경 ('06.10.4)</p>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p> <p>2. (생략)</p> <p>3. (생략)</p> <p>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신설></p>	<p>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p> <p>① ----- ----- -----.</p> <p>1. -----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 -----</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 ----- 제47조제1항 ----- ----- -----.</p> <p>제9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p> <p>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p> <p>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p> <p>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07.4.11)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p> <p>○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로 이관</p>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제14조의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2007년 12월 31일</u>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p>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p> <p>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p>	<p>제14조의2 【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p> <p>----- <u>2009년 12월31일</u>-----</p> <p>1. ----- <u>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u></p> <p>2. ----- <u>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u></p>	<p>○ 2007.12.31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12.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p>

현행	개정안	사유
<p>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u>부동산</u>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 2. (생략)</p> <p>제1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u>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 다)와 지방자치단체</u>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 ----- <u>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u>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u>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u> ----- - - - - - ----- ----- ----- ----- ----- ----- ----- ----- ----- ----- -----.</p>	<p>○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p>

관계법령 발취

1. 관계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40조
- 「과학관육성법」 제6조
-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47조1항
-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2. 관련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제7837호(소득세법), 2007.1.11] [[시행일 2007.4.12]]

1.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2. "채권보유"라 함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가. 당해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

나. 가목의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

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 함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5.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6. "학자금대출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7. "학자금대출증권"이라 함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8. "신용보증"이라 함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나.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다. 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라.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8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9. “주택사업자”라 함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40조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과학관육성법」 제6조

제6조(등록) ①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8·12·28,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②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제2항 각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47조1항

제5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문화재의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②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5.1.5, 2005.12.29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6.12.30]

1.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1의2.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한국농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시행일 2006.4.30]]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④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

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업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05.1.5, 2005.12.31]

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 및 업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05.12.31]

⑦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

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